

2024년도 제9회 저작권보호심의분과위원회 회의록

I. 회의 개요

- 일 시: 2024. 2. 6.(화요일), 10:30
- 장 소: 대면 심의
- 참 석 자: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제2분과위원회 위원 4명 참석
 - 심의위원: 한승원(분과위원장 대행), 김정숙, 안효질, 손수호 위원
- 회의 진행순서 및 안건

1. 개회선언 및 인사말씀 분과위원장

2. 전차(제2024-5회) 회의록 확인 및 공개여부 결정 분과위원

3. 안건상정 분과위원장

〈의결안건〉 ※ 안건 검토 보고: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박현주 변호사

- 제1호: 저작권법 제133조의3에 따른 경고, 삭제 또는 전송 중단

시정권고 심의

4. 폐회선언 분과위원장

II. 회의내용 및 결과

1. 의결안건

- 제1호: 저작권법 제133조의3에 따른 경고, 삭제 또는 전송 중단 시정권고 심의
 - 주요내용: 온라인상의 불법복제물등에 대한 삭제 또는 전송 중단과 복제·전송자에 대한 경고의 시정권고 20건(안전번호 제2024-1096호~1115호)
 - 회의결과: 안전번호 제2024-1096호는 ◇◇◇ 블로그에 현재 판매중인 책의 내용을 타이핑 및 스캔하여 게시한 사안으로 타인의 저작물을 허락 없이 복제·전송하고 있는 점, 해당 저작물의 합법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작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하여 가결함.

안전번호 제2024-1097호~1098호는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출판물의 불법복제물 PDF 파일을 판매한 사안으로, 저작권 침해 정보로서 시정권고의 대상인 “불법복제물 등”에 해당하는 점, 각 저작물의 합법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여 가결함.

안전번호 제2024-1099호~1101호는 웹하드에 불법복제물을 게시한 사안으로, 원저작물의 합법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한 점 등에 비추어 가결함. 다만 그중 이미 삭제 또는 전송 중단되어 있는 게시물이 있는 경우 이에 대해서는 경고의 시정권고만 하는 것이 타당함.

그 외 불법복제물등에 해당하는 심의안건 게시물 15건은 삭제 또는 전송 중단의 시정을 권고하고 복제·전송자에 대하여는 경고의 시정을 권고하되, 이미 삭제 또는 전송 중단된 게시물에 대해서는 경고의 시정권고만 하는 것으로 가결함.

Ⅲ. 회의 의사록

1. 개회선언

- 한승원 분과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2024년 제9회 저작권보호심의분과위원회 개회를 선언함.

2. 전차(제2024-5회)회의록 확인 및 공개여부 결정

- 한승원 분과위원장: 전차 회의록 공개여부에 관해 의견을 구함.
- B 위원: 민원인이 신고한 내용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비식별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함. 그 외 나머지 부분은 공개해도 무방할 것으로 생각됨.
- C, D 위원: 위원님 의견에 동의함.
- 한승원 분과위원장: 만장일치로 전차 회의록에 대해 이상 없음을 확인하였고, 시정권고 심의 회의 부분에서 민원 정보 및 저작물명과 관련한 부분은 비식별 처리하여 공개함. 제2호 구글 검색결과 제한심의 안전에 관한 회의록은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회의공개 등에 관한 규정 제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쪽수를 기재하고 비공개로 결정함.

- B 위원: 심의대상 게시물에 있는 책은 건축사 시험과 관련된 내용인가?
- 김준근 선임: 해당 책의 내용이 전문적인 내용이라 정확한 용도는 확인이 어렵지만, 건축 관련 책으로 추정됨.
- C 위원: 민원인은 권리자로 보이며 직접 대응을 할 수 있는데 보호원에 신고를 한 이유가 무엇인가?
- 김준근 선임: 온라인보호부 담당자가 민원인과 통화한 내용에 따르면 절차를 정확히 모르는 상황이었고 민원인은 시정권고를 원하는 것으로 확인되었음.
- D 위원: 민원인을 특정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권리자가 법적 조치를 취하는 것은 쉽지 않을 것임.
- B 위원: 민원인의 신고 내용을 보면 댓글로 중지해 달라고 직접 요청한 내용이 있는 걸로 봐서 보호원에서 조치를 해주는 것을 원하는 것으로 보임.
- 한승원 분과위원장: 그러면 안전번호 제2024-1096호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하는 것에 대해 위원님들의 의견을 구함.
- B, C, D 위원: 동의함. 시정권고의 가결 의견임.
- 한승원 분과위원장: 만장일치로 제2024-1096호는 게시물에 대해 삭제 또는 전송 중단과 복제·전송자에 대한 경고의 시정을 권고하는 것에 대해 가결함.
- 박현주 변호사: (보호원이 제출한 조사 자료를 제시하면서) 안전번호 제2024-1097호~1098호는 보호원이 정보통신망을 조사하여 심의를 요청한 사안으로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출판물의 불법복제물을 판매중인 사안임.

(보호원이 제출한 채증 자료 중 게시 화면을 보여주면서)위원님들께서는 각자 PC로 접속하여 심의시스템에 등록된 모니터링 자료와 심의대상 게시물을 확인해 주시기 바람.

- A 위원: ○○○○ 같은 중고거래 사이트는 시정권고를 잘 이행 하는가?
- 김준근 선임: ○○○○의 경우 바로 이행을 하고 있음.
- 한승원 분과위원장: 그러면 안전번호 제2024-1097호~1098호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하는 것에 대해 위원님들의 의견을 구함.
- B 위원: 심의 대상 게시물이 해당 저작물의 합법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작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시정 권고의 가결 의견임.
- C, D 위원: 저작권 침해 정보인 “불법복제물등”으로서 시정권고의 요건을 충족하여 가결 의견임.
- 한승원 분과위원장: 만장일치로 안전번호 제2024-1097호~1098호는 게시물에 대해 삭제 또는 전송 중단과 복제·전송자에 대한 경고의 시정을 권고하는 것에 대해 가결함.
- 박현주 변호사: (보호원이 제출한 조사 자료를 제시하면서)안전번호 제2024-1099호~1101호는 민원인들이 신고한 사안으로 웹하드, ◇◇◇ 블로그 및 카페에 게시된 불법복제물임.
(보호원이 제출한 채증 자료 중 게시 화면을 보여주면서)위원님들께서는 각

자 PC로 접속하여 심의시스템에 등록된 모니터링 자료와 심의대상 게시물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한승원 분과위원장: 안전번호 제2024-1099호~1101호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하는 것에 대해 위원님들의 의견을 구함.
- B 위원: 심의 대상 게시물이 해당 저작물의 합법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적다고 보기 어려워 시정권고의 가결 의견임.
- C, D 위원: 정당한 권리자가 아닌 자가 불법복제물을 공중의 이용에 제공하고 있어 시정 권고의 요건을 충족하여 가결 의견임.
- 한승원 분과위원장: 만장일치로 안전번호 제2024-1099호~1101호는 게시물에 대해 삭제 또는 전송 중단과 복제·전송자에 대한 경고의 시정을 권고하는 것에 대해 가결함. 다만 그중 이미 삭제 또는 전송 중단되어 있는 게시물이 있는 경우 이에 대해서는 경고의 시정권고만 하는 것이 타당함.
- 박현주 변호사: (불법복제물 제공화면, 파일 다운로드 화면, 불법복제물 재생 화면을 제시하면서)안전번호 제2024-1102호~1115호는 보호원이 정보통신망을 조사하여 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한 건으로 모두 불법 복제물을 웹하드 등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공중의 이용에 제공한 사안임. (심의안전 목록을 제시하면서)일부 안전을 별도로 설명하겠음. 나머지 안전들은 위원님들께서 각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퀄라이저 3) 관련 조사 자료를 제시하면서)안전번호 제2024-1104호(“더 이퀄라이저 3”)는 2023.08.30. 개봉한한 해외 영화로 웹하드에서 320포인트에 판매중임.

(“안데스 설원의 생존자들) 관련 조사 자료를 제시하면서)안건번호 제2024-1110호(“안데스 설원의 생존자들)는 2023.10.19. 개봉한 해외 영화로 웹하드에서 30포인트에 판매중임.

- 한승원 분과위원장: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심의안건 목록을 확인하시어 안건번호 제2024-1102호~1115호에 대해 의결해 주시기 바람.
- 심의위원 전원: (심의안건 목록과 보호원이 제출한 자료를 확인함)모두 불법복제한 저작물을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공중의 이용에 제공한 사안임을 확인하였고 가결하는 것이 타당함. 다만, 그 중 이미 삭제 또는 전송 중단되어 있는 게시물에 대해서는 경고의 시정권고만 하는 것이 타당함.
- 한승원 분과위원장: 만장일치로 제2024-1102호~1115호 중 이미 삭제 또는 전송 중단된 게시물에 대해서는 복제·전송자에 대한 경고의 시정권고만 하고, 나머지 게시물에 대해서는 삭제 또는 전송 중단과 경고의 시정권고를 하는 것으로 의결함.

(경고, 삭제 또는 전송중단 시정권고 심의는 아래와 같이 의결함)

“안건번호 제2024-1096호, 제2024-1097호~1098호, 제2024-1099호~1101호는 가결하고 안건번호 제2024-1102호~1115호는 불법복제물등의 삭제 또는 전송 중단과 그 복제·전송자에 대한 경고의 시정권고를 하되, 이미 삭제 또는 전송 중단된 게시물에 대해서는 경고의 시정권고만 하는 것으로 가결함.”

4. 폐회 선언

- 한승원 분과위원장이 제9회 저작권보호심의분과위원회 폐회를 선언함.

2024년 제9회 저작권보호심의분과위원회 회의록이
상기와 다름없음을 확인합니다.

2024. 2. 19.

분과위원장 대행 한승원

위원 김정숙

위원 안효질

위원 손수호